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7일, 박충권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0)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 11. 20) 상정

제4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 11. 27) 상정·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2. 2) 상정·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충권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제45조의2, 제45조의3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명현)

개정안은 현행 「방사능방재법」에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의 근거조문(강제징수 포함)을 삭제하고, 부담금 부과 근거법률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있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2 및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별표4의2 등에 따라 원자력안전부담금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참고자료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현황)을 감안할 때, 근거법률을 일원화하는 것이 부담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별표에 근거법률이 규정되어야 하므로, 현행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 근거조문을 「방사능방재법」에서 삭제할 경우 동 별표에서도 삭제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장 최수진)

개정안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동법에 규정된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

려는 것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별표 제57호에서 해당 법률명을 삭제하기 위해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추가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제45조의3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에 대한 가산금 및 강제징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제45조의3이 삭제되는 경우 “개정안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및 강제징수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현 행	수 정 의 건
부 칙	부 칙
<신 설>	제2조(가산금 및 강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 및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동법에 규정된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별표 제57호에서 해당 법률명을 삭제하기 위해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 중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 중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으로 한다.

법률 제 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및 강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 및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 중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5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u>1. 제13조제2항의 승인에 관련된 심사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검사를 받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u> <u>2.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심사·검사·교육 및 평가를 받는 원자력사업자</u> <u>② 부담금의 규모, 산정기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발생시키는 관련 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수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그 밖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담금</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의 규모,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u>제45조의3(강제징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u> <u>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u> <u>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u>	<u><삭 제></u>